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2016. 09. 29. 제정

제1조(설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정관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발전을 위하여 대외 관련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스페셜올림픽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의 지원·후원 등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종합대회 및 국내·외 종목별 대회의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지원·후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한국스페셜올림픽 발전을 위한 스포츠언론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창조 및 후원 등 외부 지원자의 섭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6.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위원 1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2016.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